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보건복지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3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, 재산공제를 확대하여 직장-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지역가입자 재산·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(안 제42조, 별표4)

### 1)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

직장가입자는 소득(보수월액 및 소득원액)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

### 2)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

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'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'에서 '1억원을 공제하는 것'으로 확대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목”을 “나목”으로 “소득·재산 및 자동차”를 “소득·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나목 및 다목”을 “나목”으로 하고 “재산 및 자동차”를 “재산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1)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자동차는 제외한다. 이하”를 “이하”로, “5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과 제4호는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 개정규정은 2024년 2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2조(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) ①·② (생략)<br>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·2. (생략)<br>3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br>가.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<br>나. 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<br>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73조 및 제74조에 따 | 제42조(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<br>-----.<br>1.·2. (현행과 같음)<br><u>&lt;삭 제&gt;</u> |

른 국가유공자 등(법률 제  
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  
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 
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같  
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  
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
과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  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 
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
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  
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
이 소유한 자동차  
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 
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 
자동차  
 마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  
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  
하는 자동차  
 바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  
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  
차

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

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  
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42  
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 개정규  
정은 2024년 2월분 지역가입자의  
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2 - 2706 |